

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: 2021년 3월 5일
- 제안자 : 강민구, 김대현, 김태원, 김혜정, 윤기배, 이진련, 전경원, 홍인표, 황순자 의원
- 회부일자 : 2021년 3월 9일
- 상정일자
  - 대구광역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 
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21년 3월 22일) : 원안 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강민구 의원)

### □ 제안이유

- 우수자원봉사자의 인정 및 보상체계 마련으로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해 우수자원봉사자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면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

### □ 주요내용

-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 시 1일 1회 4시간 등의 주차규제를 삭제하여 주차요금면제 혜택을 확대함(안 제2조의2제1항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박진성)

-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성숙한 참여문화 확산에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안 제2조의2 제1항에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범위를 기존 1일 1회 4시간 이내에서 당일 주차한 경우로 주차요금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음.
- 주차장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14조는 노상,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
-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,
-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시민의식 개선, 건전한 시민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한편, 대구시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2021년 1월 기준 694,209명이며 등록률은 28.7%임.

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○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범위를 기존 1일 1회 4시간 이내에서 당일 주차한 경우로 주차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인데, 향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지?	○ 주차요금 감면 범위 확대를 위해 타 법령에 따른 보훈단체 등과의 형평성 및 상위법령 저촉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, 향후 혜택범위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법리검토와 자원봉사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음.

## 5. 토론요지

- 없음

## 6. 수정안 요지

-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)

## 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